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8-215
----------	-------

제출년월일 : 2019. 10.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제안이유

-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이 통보되어 재해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시 발생된 문제점 개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는 등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방재단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례의 일부 개정

주요내용

- 단장 해임사유 신설 (안 제6조제1항)
- 상위법령 개정 등으로 용어 및 사문 규정 등 정비 (안 제7조)
- 자율방재단의 여비 지급규정 명확화 (안 제9조제8항, 제9항)
- 재해보상금 지급절차수령인 신설 (안 제16조)
- 재해보상금 지급 시 준용규정 신설 등 (안 제17조)

개정조례안 : 붙임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2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3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예산수반사항 : 붙임4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19. 8. 16. ~ 2019. 9. 5. (21일간)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전문)
- 입법예고 결과보고, 방침결정문 : 붙임5

【붙임1】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65조에 따라” 로 하고, “규정 함을” 을 “규정 함을” 로 한다.

제4조제6항 중 “기하기” 를 “도모하기” 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3. 단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중 “불분명한” 을 “분명하지 않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 중 “안산시외 지역으로 이주 한” 을 “안산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 를 “그렇지 않다” 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자연재난” 을 “재난” 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자연재난” 을 “재난” 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전염병” 을 “감염병” 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사회재난과 관련된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 등” 을 삭제한다.

제7조제3항 중 “지역 피해 발생시” 를 “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효율적” 을 “효율적인” 으로 하고, “세분화 할” 을 “세분화할” 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소집을 할” 을 “소집할” 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3호서식의” 를 “제3호서식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호서식의” 를 “제4호서식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9월말까지” 를 “8월 말까지” 로 한다.

제9조제8항 중 “범위 내에서” 를 “범위에서”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식대, 여비, 유류대” 를 “운임, 숙박비, 식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로

하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8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6호서식에 의거”를 “제6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단원에 대한”을 “단원의”로 한다.

제14조 중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을 “중앙지원단에 자문할”로 한다.

제16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6조 및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재해보상) ①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정도가 확정된 날. 다만, 장애정도를 판정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의 신체 장애가 발생한 날로 한다.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안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안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⑤ 시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등을 따른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안전사회지원과
입 안	실·과장 직위·성명	안전사회지원과장 김 기 서
	담당·팀장 직위·성명	자연재난팀장 윤 충 오
자	담당자 성명·전화	박 주 희 (행정 2645)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u>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u> 안산시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u>규정 함을</u>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구성) ① ~ ⑤ (생략)</p> <p>⑥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u>기하기</u>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한다.</p> <p>⑦ ~ ⑧ (생략)</p> <p>제6조(해임) <신설></p> <p><u>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u>불분명한</u> 경우 2. 단원이 <u>안산시외 지역으로</u>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u>그렇지 아니한다.</u> 3. ~ 5. (생략) 	<p>제1조(목적) ----- -----<u>제65조에 따라</u> ----- -----<u>규정함을</u>----- -----.</p> <p>제4조(구성)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u>도모하기</u> ----- -----.</p> <p>⑦ ~ ⑧ (현행과 같음)</p> <p>제6조(해임) ① <u>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u> 2. <u>단장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u> 3. <u>단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u> 4. <u>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u> <p>② <u>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u>분명하지 않은</u> ---- 2. --- <u>안산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u> --- -----<u>그렇지 않다.</u> 3. ~ 5.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p>제7조(임무) ① 방재단은 <u>자연재난</u>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모든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p> <p>② (생략)</p> <p>1. (생략)</p> <p>2. <u>자연재난</u>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p> <p>3. ~ 7. (생략)</p> <p>8. <u>전염병</u> 방재활동 및 공중보건관리 등</p> <p>9. ~ 10. (생략)</p> <p><u>11. 사회재난과 관련된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 등</u></p> <p>③ 방재단은 다른 <u>지역 피해 발생시</u>에는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p> <p>④ 단장은 업무의 <u>효율적</u>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u>세분화</u> 할 수 있다.</p> <p>제8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u>소집</u>할 수 있다.</p> <p>② ~ ③ (생략)</p> <p>제9조(활동 및 지원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u>제3호서식</u>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7조(임무) ① ----- <u>재난</u> -----</p> <p>-----</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u>재난</u> -----</p> <p>-----</p> <p>3. ~ 7. (현행과 같음)</p> <p>8. <u>감염병</u> -----</p> <p>9. ~ 10. (현행과 같음)</p> <p><삭제></p> <p>③ ----- <u>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u> -----</p> <p>-----</p> <p>-----</p> <p>④ ----- <u>효율적인</u> -----</p> <p>----- <u>세분화</u> -----</p> <p>제8조(소집) ① -----</p> <p>----- <u>소집</u> -----</p> <p>-----</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9조(활동 및 지원 등) ① -----</p> <p>-----</p> <p>----- <u>제3호서식에 따른</u> -----</p> <p>-----</p>

현행	개정안
<p>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활동이 있을 시 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 ⑤ (생략)</p> <p>⑥ 단장은 매년 <u>9월말까지</u>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⑦ (생략)</p> <p>⑧ 시장은 예산의 <u>범위 내에서</u>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u>식대, 여비, 유류대</u> 등 필수 경비</p> <p>2. ~ 5. (생략)</p> <p><u><신설></u></p> <p>제11조(출입증 발급) ① (생략)</p> <p>② 출입증은 별지 <u>제6호서식에 의거</u> 시장이 발급한다.</p> <p>제12조(교육) ① <u>단원에 대한</u>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 ----- <u>제4호서식에 따른</u> ----- -----.</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② ----- <u>8월 말까지</u> ----- ----- ----- -----.</p> <p>⑦ (현행과 같음)</p> <p>⑧ ----- <u>범위에서</u> ----- ----- -----.</p> <p>1. ----- ----- <u>운임, 숙박비, 식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u> -----</p> <p>2. ~ 5. (현행과 같음)</p> <p>⑨ <u>제8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u></p> <p>제11조(출입증 발급)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제6호서식에 따라</u> ----- -----.</p> <p>제12조(교육) ① <u>단원의</u> ----- ----- ----- -----.</p>

현행	개정안
<p>② ~ ④ (생략)</p> <p>제14조(중앙자문단 자문 등)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u>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u></p> <p><신설></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4조(중앙자문단 자문 등) ----- ----- ----- <u>중앙지원단에 자문할</u> -----.</p> <p>제16조(재해보상) ①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p> <p>1. <u>요양보상</u> :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p> <p>2. <u>장해보상</u> : 해당 단원의 장애정도가 확정된 날. 다만, 장애정도를 판정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의 신체 장애가 발생한 날로 한다.</p> <p>3. <u>장제보상 및 유족보상</u> :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p> <p>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u>안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u>」 제3조에 따른 안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p> <p>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u>민법</u>」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p> <p>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p>

현 행

개 정 안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다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⑤ 시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 조치 한다.

<신 설>

제17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등을 따른다.

제16조 (생 략)

제18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출 입 증

출 입 증



